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자율형 컨설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8 - 016호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2.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나. 18년도 사업 추진 방향

- 기초컨설팅은 컨설팅 유형에서 제외하고, 기존 전문컨설팅 사업은 경영컨설팅 사업(표준형/자율형)으로 개편
 - * 기초컨설팅은 지역 밀착 상시지원이 가능한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통합지원기관 고유과업화
- 경영컨설팅 수요 발굴 및 수요 기업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 진단, 적합한 컨설팅 유형 안내, 컨설팅 기관 매칭 등 사전상담 지원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형 컨설팅 강화
 - * 업종/지역별 공동컨설팅 수요발굴 지원 강화, 업종/지역별 리더 사회적기업 및 컨설팅기관이 협력하는 컨설팅 제공 활성화

◦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컨설팅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우대/제재 조치 강화

* 컨설팅 평가 우수기관 예산범위 내 인센티브,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컨설팅기관 (대표자)는 2년간 사업참여 제한

2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기간: 공고일 ~ 3. 9(금)까지

※ 이번 차수 신청은 자율형(지속성장,공동)에 한하며, 표준형 컨설팅은 별도공고 예정

○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컨 설 팅 내 용
자율형	지속 성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 심화과제
	공동	2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5개 기업	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수행기간
자율형	지속성장	최대 5회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기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6개월
	공동			

□ 기업부담금 산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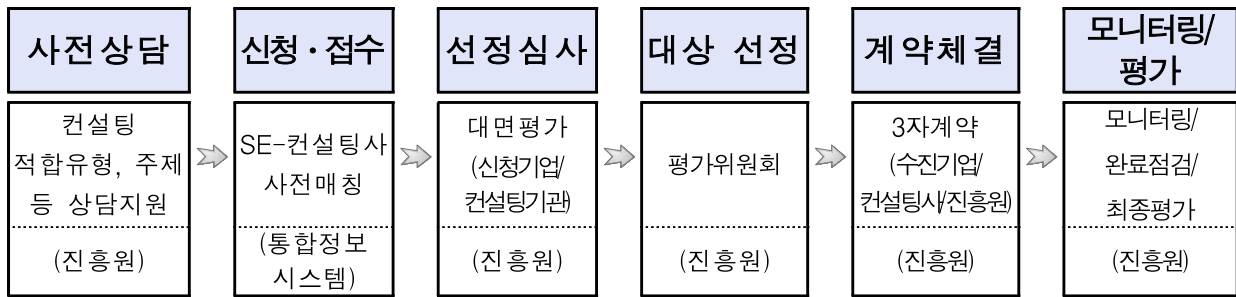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부담 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30%)}
2,500만원 초과		산출식에 따름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 × 40%)}

□ 우대 가점: 최대 5점 부여(공동형은 적용하지 않음)

점수	가점 항목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기본/확장공시) ■ 광역 및 지자체·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 경영공시 우수기업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추진 절차



※ 사회적기업은 전문컨설팅(지속성장형, 공동형)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선정(사전 매칭)하여야 함.

※ 컨설팅기관 pool 확인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 참조(별첨)

[참고1] 본사업 수행실적 3건 이상인 컨설팅기관 대상 평가결과 A등급(상위 10%): 가경복지센터, 노무법인 동인, 리얼인사이트컨설팅
 [참고2] 작년도 컨설팅 수행 우수기관(상위 10%): 시스템앤린경영연구원, 탐기술경영연구원, HPS경영컨설팅, 오요리아시아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컨설팅기관 소속의 상근 컨설턴트(2등급 이상)를 말함.
-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일수의 70%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기관은 참여컨설턴트가 사업연도 내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투입 일수가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조정하여야 함
- 참여컨설턴트 1일 1개 수진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비상근 컨설턴트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40% 이내에서 인정(단, 공동형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친 경우 40% 초과하여 인정가능)
- 교육자료 개발, 매뉴얼 개발, 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단순 유통채널 확보, 기초컨설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일부 주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신청구비서류

-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 ※ 공동컨설팅의 경우 '컨설팅(공동형) 참여기업 명단'[별지3-2호 서식] 추가 제출
-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

□ 컨설팅 신청 이후 진행 절차

-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함
 - ※ 대면평가는 3월 3~4째주 중 권역별로 실시(예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 이후 개별 안내 예정
- 대면평가에는 사회적기업(총괄책임자)과 컨설팅기관(과제책임자)이 공동으로 배석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음.
 - ※ 대면평가지 총괄책임자와 과제책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대면평가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내용 및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필요성과 추진 의지 등을, 컨설팅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역량과 수행계획의 타당성을 중점 평가
 - ※ 대면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에서 미스매칭(mismatching)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에 재매칭 기회 제공 예정
-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예산 규모 및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점(대면평가 점수+우대가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 이 때, 컨설팅 내용, 투입인력, 컨설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진흥원·수진기업(사회적기업)·컨설팅기관 간 계약체결(18.3월 말 예정)
- 컨설팅 착수 및 수행
 - ※ 컨설팅 과제는 계약 이후 최대 6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함.
- 모니터링 및 점검(진흥원,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기관)
-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성과 확인 및 비용 지급
- 컨설팅 비용 지급

□ 기타 사항

- 접수는 연간 2~3회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추가공고 가능(2,4,6월초 중 접수 예정)
- 표준형 컨설팅(구 특화형)은 별도로 신청 공고 예정

[참고] 표준형 컨설팅 예상 주제
○ 상품경쟁력 강화 컨설팅
- 상품개선점 도출 및 개선 코칭 지원(상품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연계)
○ 공공시장 진출 컨설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벤처나라, 학교장터(S2B) 등 진출지원
-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제안서 작성, 코칭 지원
○ 재무관리 역량강화 컨설팅
- 재무 진단을 통한 부실 요인 분석 → 재무구조,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 사회적금융 등 자금 조달 관련 자문 및 연계 컨설팅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전화) 031-697-7832,7837 (팩스) 031-697-7854	

*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참고 1

경영컨설팅 제도 개요(2018)

유형	표준형(구 특화형)	자율형		
		지속성장형	공동형	
지원내용	기본적인 경영현안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 제공	경영·기술 전 분야의 심화된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지원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해결지원	
선정방식	주제	수요자 선택		
	컨설팅기관	수요자 선택 (진흥원 Pool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공동형의 경우 별도제한 가능		
	프로세스	사전상담→컨설팅기관 매칭 →대면평가→선정→개별(공동)컨설팅		
	선정심사	컨설팅주제-컨설팅기관-컨설팅계획을 바탕으로 대면평가 진행		
지원범위	3 ~ 10백만원 내외	제한없음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회(연간 1회 지원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000만원 이내로 지원금 지급 			
기업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 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 ×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 ×30%)}
2,500만원 초과	950만원		{550만원 + (2,500만원 초과 금액×40%)}	

참고 2

자율형 컨설팅 추진 절차 및 제출 서류

단 계	수행방법	제출 서류
컨설팅기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컨설팅기관→진흥원) ○ 컨설팅기관의 자격 및 요건 검토 및 등록 승인(진흥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컨설팅기관</div> [별지 제27호] [별지 제28호]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담 실시(신청기업→지원기관) ○ 컨설팅기관 매칭지원(지원기관→신청기업) ○ 수행계획서 작성(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협의) ○ 경영컨설팅 신청(신청기업→진흥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신청기업</div> [별지 제2-1호, 제3-1호] [별지 제11-1호, 11-2호] [별지 제12호]
대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신청기업,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진흥원) 	-
지원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평가 점수를 산정(대면평가 점수+우대가점)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 	-
계약 체결 및 사업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수진기업, 컨설팅기관 3자 계약 체결 ○ 착수금 지급(수진기업→컨설팅기관) 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수진기업, 컨설팅기관</div> [별지 제14호] [별지 제15-1호, 제15-2호] [별지 제16-1호, 제16-2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19호]
중간 보고 및 중간(수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작성(컨설팅기관) ○ 중간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실시(진흥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컨설팅기관</div>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완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 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등을 근거로 완료점검 실시(진흥원) ○ 만족도 조사(수진기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컨설팅기관</div> [별지 제23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수진기업</div> [별지 제24호] [별지 제26호]
사업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급 통보(진흥원→컨설팅기관) ○ 사업비 지급 신청 및 지급(컨설팅기관, 진흥원)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평가 등급 산정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점검 점수(70%)+만족도 점수(30%)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참고 3

평가표(지속성장형, 공동형)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대면평가표

신청기업명		평가일	20 . . .
컨설팅기관		평가위원	(서명)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A	B	C	D	E	평점
신청기업 (사회적 기업)	목적 및 추진의지 (25)	기업의 컨설팅 니즈와 주제의 명확성	10	8	6	4	2	
		컨설팅목표와 방향이 적정한지 여부	10	8	6	4	2	
		대표자(총괄책임자)의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5	4	3	2	1	
	사업관리방안 (5)	신청기업의 컨설팅 추진체계의 적정성	5	4	3	2	1	
	결과의 활용가능성 (5)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의지 및 가능성	5	4	3	2	1	
소 계			()점/35점					
컨설팅 기관 (컨설턴트)	수행방안 (35)	기업의 문제점 및 환경분석 등의 도출 적정성과 정확성	10	8	6	4	2	
		현재 상태와 컨설팅 완료 후 성과 목표치의 적절성	10	8	6	4	2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10	8	6	4	2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사업관리방안 (15)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8	6	4	2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5	4	3	2	1	
	사업예산 (5)	과제범위 대비 사업예산 산정의 적정성	5	4	3	2	1	
	사업완료 (10)	성과요약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5	4	3	2	1	
		컨설팅 사업 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5	4	3	2	1	
소 계			()점/65점					
총 점			()점/100점					
평가의견								

※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 개최시에 변경될 수 있음

참고 4

컨설턴트 등급 및 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단가 (VAT포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12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70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 ·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컨설팅 해당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72,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5년 이상) ·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40,000